

주거복지사 윤리강령

이 윤리강령은 주거복지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복지사는 국민의 주거복지에 대한 욕구와 주거지역과 연계된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거주민을 비롯한 관련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제도 등 필요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건의하는 활동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의 편에 서서 안정된 주거환경을 바탕으로 삶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지원하는데 적극 앞장선다. 이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토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한다.

주거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사로서 맡은 바 임무와 활동을 판단·평가 지원하는 일을 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 윤리기준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전문가로서의 기본자세

- ① 주거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형성 및 올바른 주거문화 정착을 도모하는 일에 책임을 진다.
- ② 주거복지사는 고객의 성별·연령·경제적 형편·신체, 정신적 장애·종교·다문화 국적·사회경제적 지위·정치적 신념·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 ③ 주거복지사는 국민 주거생활의 실질적 편의와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 ④ 주거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편견적 행위나 부당한 일에 타협 또는 간섭 하지 않는다.
- ⑤ 주거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거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 ⑥ 주거복지사는 주거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참된 공동체 문화실현과 주거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의무

- ① 주거복지사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편의 지원을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를 활용하고 전파하는 책임을 진다.
- ② 국민,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사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서비스 연계 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
- ③ 업무수행에서 얻은 개인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 ④ 서비스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부득이 공개해야할 경우 관련 담당자에 한하도록 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 및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⑤ 주거복지사는 최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거복지 현장실습지원기구가 요구하는 제반 교육 등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 ⑥ 주거복지사는 주어진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고객에 대한 윤리기준

- ① 주거복지사는 고객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 ② 주거복지사는 고객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신적, 신체적인 판단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여야 한다.
- ③ 주거복지사는 직무 수행에서 얻은 고객의 사생활 및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그에 대한 비밀을 유지 하여야 하며, 그 정보를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주거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 신체적, 정신적 접촉을 함에 있어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주거복지사는 취약계층 고객의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원칙으로 저들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4. 주거복지사의 관련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 ① 주거복지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관련기관의 정책이나 규정을 준수하고 고객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주거복지사는 관련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가로서 대응하여 고객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옹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주거복지사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 ① 주거복지사 전문가단체는 주거복지사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거복지사가 주거복지윤리를 실천함에 있어 관리 감독을 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② 주거복지사 윤리위원회는 주거복지사가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하여야 한다.
- ③ 주거복지사는 주거복지사 윤리위원회의 윤리적 규정과 결정을 준수하고 존중하여야 한다.